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2년 09월 02일

위천면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이 *연	이 *연 1956-08-15	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원학길	직권말소 2022-09-02